

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6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한준호 · 전종덕
손 솔 · 김종민 · 정혜경
김준형 · 임미애 · 한창민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
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
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
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.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
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,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
별 소지가 있음.

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
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
에 대비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건근로 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파견기간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<u>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6조(파견기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